

#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431
번호	

제출년월일 : 1998.11.

제 출 자 : 파주시장

## 제안 이유

-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부합되지 않는 법조문의 수정과 규제 범위를 벗어난 조문의 개정 및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를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100미터 이내” 에서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로 수정
- 법령에 근거없는 과징금 가감기준 “8.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허가없이 양도하거나 양수한 때(노외주차장에 한한다.)” 를 삭제

##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영제13조제4항”을 “시행규칙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직선거리 5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100미터이내”를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영별표1비고제10호”를 “영별표1비고제9호”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영제6조제1항별표1비고제11호”를 “영제6조제1항별표1비고제10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영제11조의2제2항”을 영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별표3의 “위반검토 및 가감후 과징금”항목을 삭제하고 “기본과징금”을 “과징금”으로 수정하며 “8.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허가없이 양도하거나 양수한 때(노외주차장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27조의 “법제30조제2항”을 “법제30조3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3조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② 법 제1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는 영제13조제4항에 규정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①(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② -----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는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p>
<p>제2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50미터이내 또는 도로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p> <p>② (생략)</p>	<p>제2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p> <p>-----</p> <p>-----</p> <p>-----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로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p> <p>② (생략)</p>
<p>제22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별표 1비고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화물지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부설주차장(이하 “조업주차장” 한다)은 당해 시설물의 용도 및 규정에 적합하게 조업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 하도록 하되, 그 위치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당해 설치물의 설치 허가서에 시장이 지정한다</p>	<p>제22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별표 1비고 제9호 -----</p> <p>-----</p> <p>-----</p> <p>-----</p>
<p>제24조 (지체부자유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제6조 제1항 별표 1 비고 제11호에 규정에 의하여 설치 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하다</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②. (생략)</p>	<p>제24조 (지체부자유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제6조 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p> <p>-----</p> <p>-----</p> <p>1. (현행과같음)</p> <p>2. (현행과같음)</p> <p>3. (현행과같음)</p> <p>② (현행과같음)</p>

# 신·구조문 대비 표

현행	개정안
<p>제26조 (과징금 처분) ① 영 제11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산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p> <p>제27조(과태료 처분) 벌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수하는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p>	<p>제26조 (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p> <p>제27조(과태료 처분) 벌제30조제3항의-----            -----</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b>【별표 3】</b> <b>과징금 가감 기준</b> (제26조 관련) (단위 : 만원)	<b>【별표 3】</b> <b>과징금 부과 기준</b> (제26조 관련) (단위 : 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위 반 행 위</th> <th rowspan="2">위반강도</th> <th rowspan="2">기 본 과징금</th> <th colspan="2">가감후과징금</th> </tr> <tr> <th>신규 위조</th> <th>허가 위조</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 관리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게시한 때 (신 설)</td> <td>위반시</td> <td rowspan="2">250</td> <td>250</td> <td>250</td> </tr> <tr> <td>위반상태가1개월이상</td> <td>300</td> <td>300</td> </tr> <tr> <td rowspan="3">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신 설)</td> <td>위반시</td> <td rowspan="3">100</td> <td>90</td> <td>100</td> </tr> <tr> <td>2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의50%이상</td> <td>100</td> <td>110</td> </tr> <tr> <td>3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의100%이상</td> <td>110</td> <td>130</td> </tr> <tr> <td rowspan="2">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위반한 때 (신 설)</td> <td>위반시</td> <td rowspan="2">50</td> <td>45</td> <td>50</td> </tr> <tr> <td>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td> <td>50</td> <td>60</td> </tr> <tr> <td rowspan="2">4.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신 설)</td> <td>위반시</td> <td rowspan="2">50</td> <td>45</td> <td>55</td> </tr> <tr> <td>2회이상 위반시</td> <td>50</td> <td>60</td> </tr> <tr> <td rowspan="2">5.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신 설)</td> <td>위반시</td> <td rowspan="2">50</td> <td>45</td> <td>55</td> </tr> <tr> <td>2회이상 위반시</td> <td>50</td> <td>60</td> </tr> <tr> <td rowspan="2">6.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신 설)</td> <td>개선명령 1회 위반시</td> <td rowspan="2">50</td> <td>45</td> <td>55</td> </tr> <tr> <td>개선명령 2회 위반시</td> <td>50</td> <td>60</td> </tr> <tr> <td rowspan="2">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신 설)</td> <td>위반시</td> <td rowspan="2">50</td> <td>45</td> <td>55</td> </tr> <tr> <td>2회이상 위반시</td> <td>50</td> <td>60</td> </tr> <tr> <td rowspan="2">8.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받은 권리의무를 허가없이 양도하거나 양수한 때 노외주차장에 한한다.</td> <td>위반시</td> <td rowspan="2">50</td> <td>45</td> <td>55</td> </tr> <tr> <td>위반상태가1개월이상</td> <td>50</td> <td>60</td> </tr> </tbody> </table>	위 반 행 위	위반강도	기 본 과징금	가감후과징금		신규 위조	허가 위조	1. 관리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게시한 때 (신 설)	위반시	250	250	250	위반상태가1개월이상	300	300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신 설)	위반시	100	90	100	2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의50%이상	100	110	3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의100%이상	110	130	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위반한 때 (신 설)	위반시	50	45	50	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50	60	4.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신 설)	위반시	50	45	55	2회이상 위반시	50	60	5.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신 설)	위반시	50	45	55	2회이상 위반시	50	60	6.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신 설)	개선명령 1회 위반시	50	45	55	개선명령 2회 위반시	50	60	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신 설)	위반시	50	45	55	2회이상 위반시	50	60	8.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받은 권리의무를 허가없이 양도하거나 양수한 때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위반시	50	45	55	위반상태가1개월이상	50	6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위 반 행 위</th> <th rowspan="2">(삭 제)</th> <th rowspan="2">과징금</th> <th colspan="2">(삭 제)</th> </tr> <tr> <th>(삭제)</th> <th>(삭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 관리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게시한 때 (법제15조제2항 관련)</td> <td>(삭 제)</td> <td rowspan="2">250</td> <td>(삭제)</td> <td>(삭제)</td> </tr> <tr> <td>(삭 제)</td> <td>(삭제)</td> <td>(삭제)</td> </tr> <tr> <td rowspan="3">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법제15조제2항 관련)</td> <td>(삭 제)</td> <td rowspan="3">100</td> <td>(삭제)</td> <td>(삭제)</td> </tr> <tr> <td>(삭 제)</td> <td>(삭제)</td> <td>(삭제)</td> </tr> <tr> <td>(삭 제)</td> <td>(삭제)</td> <td>(삭제)</td> </tr> <tr> <td rowspan="2">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위반한 때 (법제6조제1항 관련)</td> <td>(삭 제)</td> <td rowspan="2">50</td> <td>(삭제)</td> <td>(삭제)</td> </tr> <tr> <td>(삭 제)</td> <td>(삭제)</td> <td>(삭제)</td> </tr> <tr> <td rowspan="2">4.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법제17조제2항 관련)</td> <td>(삭 제)</td> <td rowspan="2">50</td> <td>(삭제)</td> <td>(삭제)</td> </tr> <tr> <td>(삭 제)</td> <td>(삭제)</td> <td>(삭제)</td> </tr> <tr> <td rowspan="2">5.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법제18조제1항 관련)</td> <td>(삭 제)</td> <td rowspan="2">50</td> <td>(삭제)</td> <td>(삭제)</td> </tr> <tr> <td>(삭 제)</td> <td>(삭제)</td> <td>(삭제)</td> </tr> <tr> <td rowspan="2">6.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법제23조제3항 관련)</td> <td>(삭 제)</td> <td rowspan="2">50</td> <td>(삭제)</td> <td>(삭제)</td> </tr> <tr> <td>(삭 제)</td> <td>(삭제)</td> <td>(삭제)</td> </tr> <tr> <td rowspan="2">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법제25조제1항 관련)</td> <td>(삭 제)</td> <td rowspan="2">50</td> <td>(삭제)</td> <td>(삭제)</td> </tr> <tr> <td>(삭 제)</td> <td>(삭제)</td> <td>(삭제)</td> </tr> <tr> <td rowspan="2">(삭 제)</td> <td>(삭 제)</td> <td rowspan="2">(삭제)</td> <td>(삭제)</td> <td>(삭제)</td> </tr> <tr> <td>(삭 제)</td> <td>(삭제)</td> <td>(삭제)</td> </tr> </tbody> </table>	위 반 행 위	(삭 제)	과징금	(삭 제)		(삭제)	(삭제)	1. 관리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게시한 때 (법제15조제2항 관련)	(삭 제)	250	(삭제)	(삭제)	(삭 제)	(삭제)	(삭제)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법제15조제2항 관련)	(삭 제)	100	(삭제)	(삭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삭제)	(삭제)	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위반한 때 (법제6조제1항 관련)	(삭 제)	50	(삭제)	(삭제)	(삭 제)	(삭제)	(삭제)	4.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법제17조제2항 관련)	(삭 제)	50	(삭제)	(삭제)	(삭 제)	(삭제)	(삭제)	5.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법제18조제1항 관련)	(삭 제)	50	(삭제)	(삭제)	(삭 제)	(삭제)	(삭제)	6.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법제23조제3항 관련)	(삭 제)	50	(삭제)	(삭제)	(삭 제)	(삭제)	(삭제)	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법제25조제1항 관련)	(삭 제)	50	(삭제)	(삭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제)	(삭 제)	(삭제)	(삭제)
위 반 행 위				위반강도	기 본 과징금	가감후과징금																																																																																																																																															
	신규 위조	허가 위조																																																																																																																																																			
1. 관리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게시한 때 (신 설)	위반시	250	250	250																																																																																																																																																	
	위반상태가1개월이상		300	300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신 설)	위반시	100	90	100																																																																																																																																																	
	2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의50%이상		100	110																																																																																																																																																	
	3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의100%이상		110	130																																																																																																																																																	
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위반한 때 (신 설)	위반시	50	45	50																																																																																																																																																	
	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50	60																																																																																																																																																	
4.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신 설)	위반시	50	45	55																																																																																																																																																	
	2회이상 위반시		50	60																																																																																																																																																	
5.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신 설)	위반시	50	45	55																																																																																																																																																	
	2회이상 위반시		50	60																																																																																																																																																	
6.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신 설)	개선명령 1회 위반시	50	45	55																																																																																																																																																	
	개선명령 2회 위반시		50	60																																																																																																																																																	
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신 설)	위반시	50	45	55																																																																																																																																																	
	2회이상 위반시		50	60																																																																																																																																																	
8.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받은 권리의무를 허가없이 양도하거나 양수한 때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위반시	50	45	55																																																																																																																																																	
	위반상태가1개월이상		50	60																																																																																																																																																	
위 반 행 위	(삭 제)	과징금	(삭 제)																																																																																																																																																		
			(삭제)	(삭제)																																																																																																																																																	
1. 관리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게시한 때 (법제15조제2항 관련)	(삭 제)	250	(삭제)	(삭제)																																																																																																																																																	
	(삭 제)		(삭제)	(삭제)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법제15조제2항 관련)	(삭 제)	100	(삭제)	(삭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삭제)	(삭제)																																																																																																																																																	
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위반한 때 (법제6조제1항 관련)	(삭 제)	50	(삭제)	(삭제)																																																																																																																																																	
	(삭 제)		(삭제)	(삭제)																																																																																																																																																	
4.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법제17조제2항 관련)	(삭 제)	50	(삭제)	(삭제)																																																																																																																																																	
	(삭 제)		(삭제)	(삭제)																																																																																																																																																	
5.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법제18조제1항 관련)	(삭 제)	50	(삭제)	(삭제)																																																																																																																																																	
	(삭 제)		(삭제)	(삭제)																																																																																																																																																	
6.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법제23조제3항 관련)	(삭 제)	50	(삭제)	(삭제)																																																																																																																																																	
	(삭 제)		(삭제)	(삭제)																																																																																																																																																	
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법제25조제1항 관련)	(삭 제)	50	(삭제)	(삭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제)																																																																																																																																																	
	(삭 제)		(삭제)	(삭제)																																																																																																																																																	